

『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03월 0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03월 0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03월 16일

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변 동 석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(신고시설) 공간 무상사용 기간 만료('22. 5. 20)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 전환하여 시설 운영 관리에 책무성을 강화하고, 위탁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
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 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(시설의 설치)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 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필요성

-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,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위탁 추진 필요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
- 위치 : 구미시 금오산로 5길 10-4 (1층~2층)
- 시설규모 : 사용 연면적 373.8㎡ (임차보증금 70,000천원)
- 주요시설

층별	연면적	시설내용
1층	186.9㎡	프로그램실, 휴게실, 상담실, 버블샴, 사무실
2층	186.9㎡	공동작업장, 컴퓨터실, 주방 등

< 구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 >

- ◆ (운영주체) 경북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(지부장 장명희)
- ◆ (사업내용) 교육재활사업, 생활자립지원사업, 직업재활사업, 사회적응교육, 지역사회 연계, 정보제공 및 상담
- ◆ (2022. 예산지원) 인건비 및 운영비 204백만원 (도비18%, 시비 82%)
- * 2021. 결산 262백만원(보조금195백만원, 자부담 67백만원)

◆ 시설 현황

센터장	설치년도	규모	정원/현원	종사자	비고
장명희 (비상근)	'07.8.8.	373.8㎡	20명/20명	시설장 1명, 복지사 4명, 조리원 1명	임차보증금 70백만원 (시 지원)

○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간 (2022. 5. ~ 2027. 5.)

○ 위탁방법 : 위·수탁자 공개모집,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
○ 위탁 소요예산 : 연간 204백만원 정도

* 2022년 기준금액, 도비 18% 시비 82%

○ 운영체 신청자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법인
-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함.
(단, 시설장은 협의 가능)

○ 수탁자 선정 세부일정

- 공개모집 및 신청 접수 : 2022. 3월 ~ 4월
-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: 2022. 4월 중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2. 5월 중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차 병

○ 본 동의안은

-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모로 선정될 운영업체의 신청자격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정하고 현재 운영 인력을 승계 가능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,

- 상위 법령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과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기반으로 더욱 명확한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·단체는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